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293호
2026년 7월 31일
금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○ 고 시 제 1 1 9 호 만수동5의1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공 동 주 택 과 2
위한 주민공람·고시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6-119호

만수동5의1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고시

우리 구 만수동 5-19번지 일원 만수동5의19번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31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2026. 7. 31. ~ 2026. 8. 13.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남동구청 공동주택과(☎032-453-6424,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)
백범로180번길 4, 201호(만수동) 조합사무실(☎032-466-0410)
3. 공람내용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만수동5의19번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(변경없음)
 - 나. 시행구역 : 인천 남동구 만수동 5-19번지 일원(변경없음)
 - 다. 시행면적 : 2,000㎡(변경없음)
 - 라. 조합명칭 : 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변경없음)
 - 마. 사무소 소재지 :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4, 201호(변경없음)
 -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[변경없음]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0개월
- 사. 변경사항
 - 조합 정관개정
 - 조합임원 변경
 - 조합원 변경(상속)
4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5. 의견제출처 : 남동구청 공동주택과(남동구 소래로 633, 구청 본관2층)

공람 의견서

☐ 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

의견제출인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
의견서

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
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남동구청장 귀하

※ 제출하신 의견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
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이어서 작성하시거나 별지로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.